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이유

대·내외적 뷰티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자문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에서 “심의·자문”으로 개정.

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개정(안 제11조)

다. 위원 해촉 관련 명칭 변경(안 제14조 및 제1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 뷰티산업진흥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는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뷰티
박람회 운영지원, 해외 뷰티관광객 유치활동과 지원 등 충북의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함에도 심의기능만
있어 제도적 제약이 있음.
-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해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뷰티산업진흥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